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태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30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325

03. 비관세장벽 현황_ 328

04. 수출 애로사항_ 338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341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e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기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단위: 십억 달러, %)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¹⁾²⁾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594억 달러(한화 약 87조 3,180억 원)로 전년 대비 6.1%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293억 달러(한화 약 40조 71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식품시장의 49.3%를 차지함
 - * 육류 시장규모가 91억 달러(한화 약 13조 3.770억 원)로 가장 높은 15.3%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채소류(13.0%), 낙농품 (10.1%), 과일 및 견과류(9.1%)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301억 달러(한화 약 44조 2,47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신선식품과 비슷한 수준인 50.7%의 비중을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규모 108억 달러(한화 약 15조 8,76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18.2%를 차지했고, 뒤이어 스낵류(14.1%), 편의식품(6.7%), 스프레드 및 당류(4.0%) 순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0.0	49.3	52.6	56.0	59.4	100.0	6.1
신선식품	24.8	24.3	25.9	27.7	29.3	49.3	5.8
- 육류	7.7	7.5	8.0	8.6	9.1	15.3	5.8
- 채소류	6.5	6.4	6.8	7.3	7.7	13.0	5.5
- 낙농품	5.0	4.9	5.2	5.6	6.0	10.1	7.1
- 과일 및 견과류	4.6	4.5	4.9	5.1	5.4	9.1	5.9
- 유지류	1.0	1.0	1.0	1.1	1.1	1.9	0.0
가공식품	25.2	25.0	26.7	28.3	30.1	50.7	6.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4	9.2	9.8	10.3	10.8	18.2	4.9
- 스낵류	6.7	6.7	7.2	7.8	8.4	14.1	7.7
- 편의식품	3.5	3.4	3.6	3.8	4.0	6.7	5.3
- 스프레드 및 당류	2.0	2.0	2.1	2.2	2.4	4.0	9.1
- 소스 및 향신료	1.6	1.6	1.7	1.8	1.9	3.2	5.6
- 펫푸드	1.0	1.1	1.2	1.3	1.5	2.5	15.4

1.1

1.1

1.1

1.9

- 영유아용 식품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1.0

1.0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7.170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연령대별 인구 수는 0~54세까지 균등한 편이며,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28.5%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여성 인구 수는 약 3,680만 명(약 51.2%), 남성 인구 수는 약 3,500만 명(약 48.8%)으로 남녀 인구의 비중은 균등한 편임
- 2023년 가구 수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1,67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4,100 달러(한화 약 603만 원)로 집계됨
 - 1인당 평균 소비는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고, 그중 식품에 소비하는 지출은 10.0% 증가함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826.9달러(한화 약 122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 했으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 비중이 비슷한 수준임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408.0달러(한화 약 60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식품 관련 지출의 49.3%에 달함
 - *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4%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 채소류(13.0%), 낙농품(10.1%)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418.9달러(한화 약 62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50.7%에 해당함

메이기나 못 지나르ㅠ	기 10.2 /6에 팔에 비중이 /	16 그녀, 이이 그렇ㅠ(14.	1 /0), 진의작품(0.0 /0) 문급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	(2019~202	3)				(5	<u>난</u> 위: 달려,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00.8	688.4	735.3	780.7	826.9	100.0	5.9
신선식품	347.3	339.5	362.8	385.6	408.0	49.3	5.8
- 육류	108.0	105.3	112.3	119.7	127.3	15.4	6.3
- 채소류	91.3	89.3	95.5	101.3	107.1	13.0	5.7
- 낙농품	69.5	68.2	73.1	78.5	83.3	10.1	6.1
- 과일 및 견과류	64.9	63.4	67.8	71.3	74.7	9.0	4.8
- 유지류	13.6	13.3	14.1	14.8	15.6	1.9	5.4
가공식품	353.5	348.9	372.5	395.1	418.9	50.7	6.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2.1	128.8	137.4	143.8	150.1	18.2	4.4
- 스낵류	94.1	93.8	100.7	108.3	116.3	14.1	7.4
- 편의식품	48.4	47.2	50.2	53.2	56.1	6.8	5.5
- 스프레드 및 당류	28.4	27.6	29.2	30.7	32.7	4.0	6.5
- 소스 및 향신료	22.7	22.1	23.5	25.2	26.9	3.3	6.7
- 펫푸드	14.3	15.4	16.9	18.6	20.9	2.5	12.4
- 영유아용 식품	13.5	14.0	14.6	15.3	15.9	1.9	3.9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유지류만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나머지 모든 주요 품목은 증가세를 보임. 주요 신선식품 중 채소류 소비량이 54.7kg으로 가장 크며 이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양임
 - * 낙농품 소비량은 35.8kg, 과일 및 견과류 23.9kg, 육류 20.3kg, 유지류 2.8kg로 집계됨
- 가공식품은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보다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함. 1인당 연간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은 87.2kg으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됨
 - * 이어서 스낵류 소비량이 16.6kg, 펫푸드 14.8kg, 스프레드 및 당류 14.6kg, 편의식품 13.0kg, 소스 및 향신료 12.0kg, 영유아용 식품 0.9kg 순으로 기록됨

丑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	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52.8	51.7	52.3	53.4	54.7	2.4
	- 낙농품	31.3	31.6	32.7	34.2	35.8	4.7
신선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22.8	22.5	22.8	23.3	23.9	2.6
	- 육류	18.3	18.2	18.8	19.4	20.3	4.6
	- 유지류	2.8	2.7	2.8	2.8	2.8	0.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2.6	82.5	84.2	85.5	87.2	2.0
	- 스낵류	15.0	15.1	15.4	15.9	16.6	4.4
	- 펫푸드	11.3	11.6	12.8	13.5	14.8	9.6
가공 식품	- 스프레드 및 당류	14.6	14.1	14.1	14.3	14.6	2.1
	- 편의식품	12.3	12.2	12.3	12.6	13.0	3.2
	- 소스 및 향신료	10.9	10.9	11.2	11.6	12.0	3.4
	- 영유아용 식품	0.8	0.8	0.8	0.9	0.9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436억 5,027만 8,000달러(한화 약 64조 1,659억 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26.0%), 일본(9.8%), 미국(8.8%) 등이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 對중국 수출액은 113억 6,173만 4,000달러(한화 약 16조 7,017억 원)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1.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 對일본 수출액은 42억 7,551만 6,000달러(한화 약 6조 2,850억 원)로 전년과 비교해 1.7% 감소했으며,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유지하며 0.0%를 기록함
 - * 對미국 수출액은 38억 4,044만 8,000달러(한화 약 5조 6,455억 원)로 전년보다 8.6%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11억 9,427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7,556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10.5% 증가함

(단위: 천 달러, %)

							ul 🛪	증감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34,435,156	33,848,842	37,555,238	42,309,224	43,650,278	100.0	3.2	6.1
1	중국	5,251,474	6,339,096	9,686,624	9,956,140	11,361,734	26.0	14.1	21.3
2	일본	4,270,947	4,062,924	4,060,410	4,350,024	4,275,516	9.8	-1.7	0.0
3	미국	3,493,000	4,001,762	3,886,974	4,204,033	3,840,448	8.8	-8.6	2.4
4	인도네시아	1,588,710	1,117,245	989,492	1,735,913	2,285,944	5.2	31.7	9.5
5	말레이시아	1,164,455	956,229	1,374,813	1,693,160	1,777,537	4.1	5.0	11.2
6	캄보디아	1,385,956	1,512,610	1,395,012	1,454,846	1,507,071	3.5	3.6	2.1
7	필리핀	765,857	661,208	722,995	972,332	1,281,046	2.9	31.7	13.7
8	미얀마	1,083,792	1,045,809	1,248,604	1,247,464	1,196,380	2.7	-4.1	2.5
9	한국	854,185	657,259	745,294	1,080,524	1,194,271	2.7	10.5	8.7
10	베트남	1,927,361	1,869,081	1,425,490	1,244,204	1,128,559	2.6	-9.3	-12.5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4.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 주요 수출 품목은 정미된 쌀(10.4%)이며 이외에도 두리안, 닭고기 조제품, 기타 사탕수수당 등 다양한 품목이 있음
 - * 정미된 쌀의 수출액은 45억 5,180만 3,000달러(한화 약 6조 6,912억 원)로 전년 대비 28.3% 증가함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1,219,459

1,417,996

772,010

527,896

768.199

1,132,091

1,323,883

872,112

683,354

750.978

- * 두리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8% 증가한 40억 5,567만 1,000달러(한화 약 5조 9,618억 원)를 기록해 전체 수출의 9.3% 비중을 차지함
- * 뒤이어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닭고기 조제품(6.2%), 기타 사탕수수당(3.9%), 기타 사탕수수 (3.8%) 등이 있음

							비즈	증감	' 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34,435,156	33,848,842	37,555,238	42,309,224	43,650,278	100.0	3.2	6.1
1	쌀(정미)	3,741,619	3,273,839	2,955,201	3,547,987	4,551,803	10.4	28.3	5.0
2	두리안	1,465,534	2,098,666	3,420,041	3,148,437	4,055,671	9.3	28.8	29.0
3	닭고기 조제품	2,587,794	2,415,938	2,308,499	2,913,028	2,717,627	6.2	-6.7	1.2
4	사탕 수수당 (기타)	1,651,918	875,826	630,065	1,480,426	1,695,647	3.9	14.5	0.7
5	사탕수수 (기타)	1,310,676	866,317	875,749	1,556,804	1,674,528	3.8	7.6	6.3

1,631,142

1,347,088

879,760

1,267,735

839,193

1,759,017

1,465,616

1,124,702

1,487,020

949,175

1,480,724

1,332,248

1,299,168

1,133,302

923,118

3.4

3.1

3.0

2.6

2.1

-15.8

-9.1

15.5

-23.8

-2.7

5.0

-1.5

13.9

21.0

4.7

카사바

식료품 절단한

냉동 닭고기

카사바

덱스트린·

변성전분

전분 조제

6

7

8

9

10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전체 농식품 수입액은 178억 119만 7,000달러(한화 약 26조 1,676억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19.7%의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이며, 그다음으로 중국(14.5%), 호주(8.9%), 미국 (7.6%) 순으로 나타남
 -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35억 409만 5,000달러(한화 약 5조 1,510억 원)로 전년 대비 5.0% 증기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5%씩 성장함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5억 8,882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8,056억 원)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 7%록 기록화
 - 한국산 농식품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억 16만 2,000달러(한화 약 4,412억 원)로 집계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ᄪ	증감	나 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3,466,997	13,762,881	16,055,142	17,112,454	17,801,197	100.0	4.0	7.2
1	브라질	1,553,854	2,003,625	3,012,540	3,336,508	3,504,095	19.7	5.0	22.5
2	중국	1,921,897	1,956,520	2,096,166	2,471,518	2,588,821	14.5	4.7	7.7
3	호주	642,307	700,744	1,109,158	1,229,756	1,584,078	8.9	28.8	25.3
4	미국	2,036,639	1,731,532	1,788,086	1,558,560	1,359,990	7.6	-12.7	-9.6
5	베트남	481,674	579,433	573,631	713,279	728,447	4.1	2.1	10.9
6	인도네시아	509,864	639,704	757,628	719,647	712,684	4.0	-1.0	8.7
7	인도	392,321	364,845	495,139	640,144	681,003	3.8	6.4	14.8
8	뉴질랜드	508,047	508,680	575,128	752,815	657,593	3.7	-12.6	6.7
9	미얀마	311,918	427,309	601,086	708,535	637,398	3.6	-10.0	19.6
10	말레이시아	440,133	470,666	477,156	560,318	521,525	2.9	-6.9	4.3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대두(11.3%)이며, 대두유 추출 유박, 기타 밀, 조제식료품 외 포도 등의 신선 식품도 포함됨. 상위 순위권에 포함된 전 품목은 2019년부터 꾸준히 성장 중임
 - * 기타 대두 수출액은 20억 1.173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9.573억 원)로 전년 대비 0.3% 감소된 규모로 집계됨

- * 대두유 추출 유박의 수출액은 17억 8,490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9,573억 원)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10.0%를 차지함
- * 이어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밀(7.2%), 조제식료품(4.5%), 카사바(3.1%) 등이 있음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3,466,997	13,762,881	16,055,142	17,112,454	17,801,197	100.0	4.0	7.2
1	대두(기타)	1,272,984	1,614,301	2,273,943	2,017,929	2,011,737	11.3	-0.3	12.1
2	대두유 추출 유박	1,251,811	1,013,225	1,368,352	1,635,320	1,784,901	10.0	9.1	9.3
3	밀(기타)	767,865	758,259	764,605	622,913	1,286,349	7.2	106.5	13.8
4	조제식료품	679,381	807,195	869,293	870,342	805,583	4.5	-7.4	4.4
5	카사바	267,314	419,096	420,315	565,089	552,435	3.1	-2.2	19.9
6	옥수수(기타)	158,313	282,261	403,527	436,932	446,644	2.5	2.2	29.6
7	신선 포도	145,739	147,790	177,998	247,042	283,464	1.6	14.7	18.1
8	무첨가 우유·크림	172,621	185,342	221,865	302,246	251,092	1.4	-16.9	9.8
9	신선 사과	211,691	258,648	266,610	253,821	235,418	1.3	-7.3	2.7
10	고체 우유	162,520	182,701	213,484	250,446	227,217	1.3	-9.3	8.7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2억 2,396만 7,000달러(한화약 3,292억 원)로, 연평균 3.1%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9.4%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12.9% 감소한 2억 13만 8,000달러(한화 약 3,292억 원)로 집계되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함
 - * 축산물 수출액은 1,373만 달러(한화 약 202억 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5.4%이나 전년 대비 수출규모가 46.4% 감소함, 세 품목 중 임산물 수출액만 전년보다 성장해 11.3% 증가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태국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비중	증감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미궁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98,044	220,838	260,356	264,412	223,967	100.0	-15.3	3.1
농산물	188,133	208,876	239,814	229,715	200,138	89.4	-12.9	1.6
축산물	4,089	4,555	11,571	25,623	13,730	6.1	-46.4	35.4
임산물	5,822	7,407	8,971	9,074	10,099	4.5	11.3	14.8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은 건조김, 라면, 기타 조제식료품 등의 가공식품이 있으며, 신선식품으로는 딸기가 3위에 위치함
 - * 건조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60.1% 증가한 6,093만 3,000달러(한화 약 7,004억 원)를 기록함
 - * 라면 수출액은 3,761만 1,000달러(한화 약 553억 원)로, 전년 대비 7.9% 증가함
 - * 신선 딸기는 전년 대비 55.2%로 가파르게 성장했고, 기타 조제식료품은 수출규모가 전년보다 2.9%로 소폭 증가했으나 최근 5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가장 높은 28.5%를 달성함

표 9. 한국의 對태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즈	증감	' 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399,228	391,742	402,370	443,584	476,480	100.0	7.4	4.5
1	건조김	60,122	39,910	38,379	38,053	60,933	12.8	60.1	0.3
2	라면	19,017	26,823	29,613	30,869	37,611	7.9	21.8	18.6
3	신선 딸기	6,727	7,727	8,887	8,982	13,942	2.9	55.2	20.0
4	조제식료품 (기타)	4,821	8,023	11,226	12,781	13,150	2.8	2.9	28.5
5	소스 조제품 (기타)	3,780	6,782	7,847	9,182	9,511	2.0	3.6	25.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허가 취득	• 태국 수입 전 수입허가서 취득 필요 • 취득방법: 태국 공중보건부의 SKY NET 시스템을 통해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수입허가신청서 ② 사업재D·여권 사본 ③ 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록증 및 회사통장 사본 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 ⑥ 식품 창고등록증 사본 ⑦ 장소 허가증 ⑧ 창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식품의약국 (FDA) 제품 등록		
수입신고	• E-Custom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완료 • 제출서류: ① 수입허가증 ②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식품안전증명서류 ⑧ 자유판매증명서	태국 수입업체
수입검사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물품 위험도에 따라 ① 녹색 ② 적색라인으로 통관채널을 구분 녹색라인: 저위험화물, 검사 없이 자동으로 반출허가 작색라인: 고위험화물, 물리적 검사 실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음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위험도에 따라 샘플검사 진행 저위험군: COA 미제출 화물에 대해 무작위 샘플검사 실시 - 위험군: COA 미제출 화물에 대해 높은 빈도로 무작위 샘플검사 실시 고위험군: 샘플 채취 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검사 실시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 관세 납부는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 또는 전자지불 시스템 (e-Bill System) 이용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태국의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태국 수출 시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업체(화주)는 관	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상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태국으로 △복숭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등 수출 시 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출검역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다. 다.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 수출검역 결과 합 ² 재검역을 신청할 수	f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c 있음
		선 과채류 수출 시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따라 생산국가의 담당 :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성분 분석을 진행해야 함

② 태국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태국 수입통관·검역 절차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운송수단

선적

•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입허가 취득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수입허가 취득 대상 식품을 수입하는 태국 수입업체는 태국 식품의약국(FDA) 공중보건부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SKYNET)을 통해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태국 수입허기	ㅏ취득 제출서류〉
	① 수입허가	 신청서	⑤ 수입처 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ID	·여권 사본	⑥ 식품 창고등록증 사본
품목별	③ 사업자 거	주지 등록증 사본	⑦ 장소 허가증
수입요건 파악	④ 법인 등록	증 및 회사통장 사본	⑧ 창고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등
	- 발급된 수입허가는	3년간 유효학	
			나 온라인으로 검증 가능한 인증서에 대해서는 사본
	인증 제출이 불필요		1 드러드프스 마이 기이는 단어서에 되어가도 하는
	• 태국 수입업체는 태 ː	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약	입식품 등록 및 식품등록번호 발급 필수
	– 2024년 7월 18일,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국(FDA) 규칙(2024) 급 발표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 해당 규칙에 따라, 태국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태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고, 식품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식품등록번호는 상징 마크와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식품의 생산지, 수입장소, 허가궈자의		
	- 석품등속한오는 영영 미크파 15시다 웃시도 무영되며, 석품의 영연시, 무합영소, 어가면시의 부서, 식품 분류를 나타냄		
	- 기존에는 특별 통제식품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수입 식품 전반에 걸쳐 식품등록 및 등록번호 라벨링이 의무화됨.		
	- 태국 식품의약국(FDA) 식품 유형을 ① 특별통제식품 ② 표준식품 ③ 표준라벨부착식품 ④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며,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이 상이함		
식품의약국 (FDA)			(FDA)의 식품 유형〉
제품 등록	특 별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높음
0 .	통제식품	1 0 0 0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7개 품목)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	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표준식품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우	 험도가 낮지만 식품의약국(FDA) 규정 준수 여부
	표군식품 (39개 품목)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	실 음됴, 조골릿, 자 능
	표준라벨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	신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부착식품 (11개 프모)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필요
	(11개 품목) 	• 땅, 연비가두, 소스듀,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일반 신품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품의약국(FDA) 식품 등록 불필요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일반 식품

〈식품의약국(FDA) 등록 시 식품 유형별 제출서류·수수료·처리기간〉

(식품의약국(FDA) 등록 시 식품 유영철 제물지류·구구효·저디기간/			
구분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식품
공통서류	• 식품 수입허가서 사본	• 제조시설 증명서 • 제	조과정 설명서
필요서류	 신청서(orr.17, sorbor3) 라벨 사전 승인 시: ① 100% 공식 제품 ② 제품 내·외부 패키징 ③ 라벨 및 판매용도 ④ 유통기한 ⑤ 실험실분석서 ⑥ 제품 샘플 제출 	 신청서(sorbor7) 일부 식품의 경우: ① 신청서(sorbor5) ② 100% 공식 제품 ③ 제조과정 설명서 ④ 제품내·외부 패키징 ⑤ 라벨 및 판매용도 ⑥ 유통기한 제출 	신청서(sorbor7)
수수료	3,000~5,000밧	200밧	200밧
처리기간	35~90영업일	2영업일	2영업일
식품 분류	(5개 품목) 식품첨가물, 조제분유, 유아식품, 체중조절식품, 영유아용 식품 보충제	(38개 품목) 유제품, 지방 및 식용기름, 초콜릿, 알칼리성 계란, 잼, 시리얼, 과자, 쿠키, 양념/ 조미료, 물/음료수	(12개 품목) 착향료, 껌, 사탕, 빵, 젤라틴, 일부 향신료, 조사식품, GMO식품
예외	표준식품 중 로얄젤리 함유식품, 식품보충제, 특수목적식품	식품보조제, 유제품 통조림 식품·음료는 20~35 일/2,000밧 소요	-

식품의약국 (FDA) 제품 등록

•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E-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전송

- E-Customs System은 전송된 수입신고서에 대해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수입신고번호 및 세금 납부 번호를 생성하며, 이후 검사대상선별시스템(Selectivity Profile System)은 수입신고의 검증 결과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Red Line or Green Line)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함
- 세관신고서 전송 시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통관 관련 서류를 동봉함

수입신고

〈태국 수입신고 제출서류〉

- ① 수입허가증
- 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 ② 세관 신고서
- ⑥ 제품 카탈로그, 성분표 등 기타 관련 문서
- ③ 원산지증명서(원본)
- ⑦ 포장명세서 등
- © LL 1001
- ④ 상업송장

-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위험도를 바탕으로 화물검사 방식 결정
- 전자세관 시스템은 제출된 수입신고서 및 서류를 바탕으로 식품의 위험도를 결정하며, 위험도에 따라 수입검사 진행 여부가 결정됨
- 화물검사 방식은 녹색 라인(검사 제외), 적색 라인(회물 개봉)으로 구분됨

〈태국 화물 검사 방식〉

• 화물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상태로, 검사가 면제됨 •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검역 없이 자동으로 반출허가 작색 라인 • 위험도가 높은 화물로, 검사 대상임 •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며, 원산지별로 관리하는 품목 역시 상이

〈수입 식물 품목별 검역 유형〉

수입검사

금지 품목 (Prohibited Materials)	실험 및 연구용에 한해서만 수입 허용 방콕 국제공항, 방콕항, 방콕 식물검역소 등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 비료, 식물 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제한 품목 (Restricted Materials)	식물위생증명서 동봉 필요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개사탕수수속(Saccharum)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기름오동속(Aleurites) 식물, 타로, 소맥, 대두, 녹두(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비규제 품목 (Unprohibited Materials)	 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 해당하며 별도의 수입 허가 및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검사를 위해 수입 시 검역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됨 병해충 검출 시 검역처리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음

- 태국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위험도에 따라 샘플검사 진행
-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품목으로 구분되며, 검사 내용이 상이함

〈신선 과채류 위험도별 수입검사 유형〉 • 위험군·고위험군 품목을 제외한 품목 •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며, 수출국 발행 잔류농약성분분석표 (CO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 샘플검사가 실시됨 (Low Risk) •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정밀 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됨 • 채소류: 완두콩, 샐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수입검사 • 과일류: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CO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 샘플검사가 높은 빈도로 실시됨 (High Risk) • 샘플 수집 후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며,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진행 하는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수출업체,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검사 • 샘플 채취 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비용은 (Very High Risk) 수입업체가 부담 • 수입검역 완료 후 관세를 납부한 뒤 물품 반출 - 전자 세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세 등의 납부를 위한 일련번호가 발급됨 -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전자지불 시스템(e-Bill System)으로 납부할 수 있음 - 녹색 라인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출 허가가 이루어지며, 적색 라인의 경우 회물의 물리적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출이 가능함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태국 사례별 관세 납부 방식〉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전화함

은행 보증이 필요한	•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
수입신고인 경우	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 납부 신고'로 자동
세그지 과세르	• 스이자가 해다 세그과 관세이 나브를 오근하 때에 세그 미 관세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함

수입 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 세금 및 관세 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함
-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면제 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FTA 체결현황

표 10. 태국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및 서명) ASEAN(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호주, 뉴질랜드, 일본, 페루, 칠레, 인도, RCEP, EFTA	파키스탄, 스리랑카, 터키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실류 :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메론), 감귤, 밤,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고구마, 수삼, 콜라비, 비트, 마늘쫑, 적양배추, 깻잎
 -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한국산 복숭아·포도·사과·감(단감)·딸기· 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태국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 특히, 감귤은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참외(멜론)는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이 필요함(수출 시즌 전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 축산물

- 효수제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참다래, 자두, 살구, 망고

- 채소류: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9.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Jidubang G-Market (태국)
업체 유형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s.Ple (영업 담당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자사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한국 음식은 김치, 즉석 수프,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이 주를 이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국인들과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한식당에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짐
 - 한국산 계절 과일이 수요가 있는 편임. 한국산 과일을 자주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선한 딸기를 연말이나 연초에 판매하며 한국산 배와 포도 등도 수입함. 한국산 과일은 고품질에 과즙이 풍부해 맛이 훌륭함. 이전에 한국산 인삼을 수입한 적이 있으나 판매가 저조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포도와 딸기 등 신선한 과일은 해충이나 곰팡이에 민감해서 세심한 검수가 필요함. 자사는 한국에서 과일을 수입할 때 직접 진행하거나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서 서류상의 문제가 많지 않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입 시 상품이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검역 증명서, 원산지증명서, 화학물질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임
- 태국에서 한국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위생, 잔류물 기준과 같은 서류 준비, 태국 내 추가 검사 단계 비용 증가, 엄격한 제한 및 규정을 따라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이전에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딸기와 포도를 중심으로 일부 신선 과일에서 화학물질 잔류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과일과 식품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짐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태국 보건부는 대마초 또는 대마 일부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 해당 공고를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안으로 채택하여 고시함
 -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디올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0.2%를 초과하지 않고 마약물질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대마초 및 대마에서 유래한 칸나비디올 추출물은 마약물질법 부속서 5에 명시된 마약물질 분류에 대한 보건부 고지에서 면제되며, 신식품으로 인정되어 식품 사용이 허용됨
- 태국은 돼지열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5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산 돼지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태국 보건부는 2020년 5월 8일 신선과채류 수입 시 태국 공증보건부 고시 (No. 386, 387호)에 의거하여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COA)를 제출하도록 고시함. 수출국 담당 정부 관리기관, ISO/ IEC 17025 인증 획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샘플 검사를 진행함
- 2020년 태국 보건부는 살충제 성분 중 5가지를 위험 물질로 추가하고, 최대허용량(MRL)을 없애는 대신 Zero-Tolerance 방식(불검출 원칙)의 규제를 적용함. 불검출 원칙 적용 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 한도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은 수입, 유통, 판매, 구매가 금지됨
- 수정된 천연 광천수 표준(CODEX STAN 108-1981)에서 규정하는 특정 오염물질 최고 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천연 광천수에 관한 보건부 공고를 수정함. 본 공고에서는 천연 광천수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며, 포장된 천연 광천수에 포함된 중금속 및 미생물 허용치가 규정됨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MOAC)는 2023년 1월 신선 블루베리속 과실 수입금지를 일부 완화하고, 냉동제품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보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s://food.fda.moph.go.th/food-law/ residue-01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https://food.fda.moph.go.th/food-law/ category/additives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food.fda.moph.go.th/food-law/ category/additives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수입식품 등록제 강화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7월 18일, 「식품등록번호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국(FDA) 규칙(2024)」을 발표(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 태국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태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고 식품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라벨에 표시해야 함
	-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특별 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 부착식품, 일반식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등록을 진행함
세부 내용	- 식품등록번호는 상징 마크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식품생산지, 식품 수입장소, 허가권자의 부서, 식품의 분류를 나타냄
^IIT =IIO	• 식품 등록번호가 필요한 식품
	- 특별 통제식품(7개 품목): 분유, 우유, 식품첨가물, 유아식, 밀봉된 용기에 담긴 음료, 체중조절 식품, 아이스크림
	- 표준식품(39개 품목): 이온음료,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반가공식품 등
	- 표준라벨 부착식품(11개 품목): 빵, 껌/캔디, 밀봉된 용기에 담긴 소스, 인스턴트 식품, 향신료, 완전조리식품(RTE), 특수목적식품 등
	- 일반식품: 식품의 생산방법, 생산 기구 및 보관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생산지 또는 수입지 검사를 통과한 식품, 식품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

	• 그간 특별 통제식품의 수입은 등록 필요, 표준식품과 표준라벨 부착식품의 경우 제품 통보로 갈음하였으나, 상기 규칙에 따라 수입 식품 전반적으로 식품등록과 등록번호 라벨링이 필요
세부 내용	-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국(FDA) 번호가 있는 수입식품의 구매를 권장함.
	- 식품등록번호 신청 시에는 태국 주민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현지의 수입허가(Import License)가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진행해야 함
통보일	2024년 7월 19일
시행예정일	2024년 7월 19일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703

• HTR 개념에 의한 수입 과채류 검역 강화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8월 30일 「HTR(Hold, Test and Release, 보류, 테스트 및 해제) 개념에 따른 과채류 수입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 과일과 채소 수입시 FDA 검사사무소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농약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를 심사함 법적 잔류농약 기준을 준수하면 유통이 허용되며 농약잔류 검사 결과 또는 분석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된 상품의 위험성(3개 그룹으로 구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됨
세부 내용	생산업체 규정 준수도에 따라 3개 그룹(HTR, 모니터링, 감시)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절차를 진행 ① 보류, 테스트 및 해제(HTR, Hold, test and release) 그룹
	② 액티브 모니터링(Active Monitoring, AM) 그룹 • 수입 시 수입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함 • 검사 결과가 불검출 또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분석 결과가 기준을 준수할 경우 판매가 허용하고 미달할 경우 해당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폐기

세부 내용	③ 감시 그룹(Surveillance) • HTR 그룹과 AM 그룹을 제외한 다른 수입 과일 및 채소류 •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잔류 농약 분석을 시행하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 및 판매 허용됨 • 분석 결과가 기준을 미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수입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원산지 국가에 반송하거나 페기
통보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예정일	2025년 중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702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태국 식품 건강강조표시 규정 개정"이 2024년 1월 4일 공표됨. 식품의 건강강조표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됨.
- "태국 식품 보조제 규정 개정(제5호)"이 2024년 1월 4일 공표됨. 식품 보조제 관련 규정을 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됨.
- 포장식품 및 영양 라벨링 관련 규정(2024년)
 - "태국 영양정보 라벨링 표기 규정 개정"이 2024년 1월 4일 공표됨. 식품의 영양정보 표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됨.
 - "태국 영양정보 라벨링 및 GDA(일일섭취량지침) 표기 규정 개정"이 2024년 1월 4일 공표됨. 영양 정보 표기 및 GDA 준수 대상 식품을 명확히 규정함. 본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됨.
 - "태국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이 2024년 7월 18일 공표됨.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에 따라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새로운 라벨 표시 기준을 도입함. 해당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발효되며, 실제 적용 시작일은 2025년 7월 19일임.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태국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추출 용매 규정 개정"이 2024년 4월 4일 공표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추출 용매의 품질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함. 본 규정은 태국 왕실 관보 게재일이후 발효됨.
- "태국 영유아 식품 마케팅 규제 개정"이 2024년 6월 19일 공표됨. 영유아 식품 마케팅 관리법 B.E. 2560(2017)에 따라, 영유아와 관련된 정보 전달 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거나 영유아 급식에 적합함을 암시하는 식품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 이후 2024년 8월 6일, "영유아 식품에 관한 장관급 마케팅 촉진 통제 B.E. 2567"이라는 제목으로 왕립 관보에 최종 공표됨. 본 규정은 2025년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식품 포장 및 용기 관련 규정(2024년)

- "태국 식품용 스테인리스 스틸 용구 안전 규정 개정"이 2024년 6월 25일 공표됨. 냄비, 팬, 주걱, 숟가락, 포크, 음식 트레이, 찬합 등 식품과 접촉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구가 태국 산업표준(TIS 3206-25XX)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본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 시행됨.
- "태국 전자레인지용 재가열 식품 비닐봉지 안전 규정 개정"이 2024년 7월 1일 공표됨. 폴리에틸렌 (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조된 전자레인지용 재가열 식품 비닐봉지가 태국 산업표준(TIS 3022-25XX)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됨. 본 규정은 관보 고시일로부터 180일 후 시행됨.
- "태국 식품용 비닐봉지 안전 규정 개정"이 2024년 7월 1일 공표됨.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 (PP)으로 제조된 식품용 비닐봉지가 태국 산업표준(TIS 1027-25XX)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됨. 본 규정은 관보 고시일로부터 120일 후 시행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규정	태국 식품의약국(FDA)	https://en.fda.moph.go.th/cat2-health-products/category/cat-food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	• 식품 일련번호 • 알레르기 정보 • 순 중량 • 유통기한 포장업체 또는 • 성분 • 표시 기준 의 이름과 주소 • 식품첨가물 • 기타 사항		
	표기 언어	라벨은 태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표기 사항은 영어로 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태국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함		
	표기 인이	수입된 식품은 모든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적어도 식품명, 성분, 식품 일련번호, 순 중량,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포장의 전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식품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식품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제품명	식품명은 상표명과 같이 표기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글씨의 크기를 다르게 표기해야 함		
		원산지를 포함한 식품의 특성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식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 공정 또는 식품의 재료나 외양을 함께 표기해야 함		
⊐LHII	식품 일련번호	태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으로 발급받은 식품 일련번호, 식품 생산시설 번호를 표기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111101=11	생산업체,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가이드)		태국 내 식품은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업체' 또는 '의해 생산됨'의 문구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포장업체의 경우, '포장업체' 또는 '의해 포장됨'을 표기해야 하며 생산업체나 포장업체는 '본사'로 지칭함		
		해외에서 수입된 식품은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입자' 또는 '의해 수입됨' 문구를 사용하여 생산자의 이름과 국가를 표시해야 함		
		고체의 경우 순 중량을 미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함		
	ᄼᅐᄘ	액체의 경우 순 부피를 미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함		
	순 중량	기타 식품은 순 중량으로 표기해야 함		
		성분 표기는 무게 순서대로 기재해야 함		
		성분은 중량 백분율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성분	라벨의 전체 공간이 35cm² 미만인 경우, 제품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이나 향료를 제외한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주요 성분만을 표기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식품의 성분으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 국제 번호 INS를 사용하여 성분을 정의해야 함
		식품첨가물의 특정 이름과 색소, 향미 증진제 등의 기능을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정보: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제조공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해야 함
	정보	알레르기 유형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음
		주요 성분이 알레르겐 물질이지만, 우유나 땅콩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된 식품에는 알레르기 표시가 면제됨
	인공 조미료	인공 조미료가 포함된 경우 그를 알 수 있도록 '천연 인공 향 첨가', '인공 향 첨가', '천연 향료 추가됨'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해야 함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경우,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함
	O E ZI ÷I	추가로 '제조됨'이나 '만료됨'의 문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라벨	유통기한	'월'은 숫자나 문자로 표시할 수 있음
표기사항 (가이드)		유통기한을 포장의 하단이나 다른 부분에 표시하는 경우 위치를 표시해야 함
		라벨은 포장의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부착해야 함
		라벨에 텍스트, 그림, 인증 마크 등이 표시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는 반드시 표시해야 함
		글씨의 크기는 2mm 이상으로 소비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함
		라벨의 배경과 글씨의 색은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야 함
	표시기준	수입되기 전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표시기준	식품의약국(FDA)는 특별통제 식품(Specifically-controlled food)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된 라벨을 요구함
		태국은 식품 광고 시, 거짓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광고 규칙'을 제정해 모든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되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그림에 제한이 있음. 해당 규칙에는 식품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유형,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형, 광고 형태에 따른 표시 규격, 식품 광고 시 표기해야 하는 세부 정보가 규정되어 있음
	-1e1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경고나 보관방법, 조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기타사항	영유아용 식품이나 특정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설명이 있는 경우 그를 표기할 수 있음

^{*} 자료 : 태국 보건부(MOPH: Ministry of Public Health)

• 대체육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식물성 바삭한 튀김카츠(퍼스트 프라이드 브랜드)			
원재료명	식물성 단백질(대두, 밀) 20%, 전분(밀, 쌀) 18%, 식물성 식이섬유 15%, 식물성 기름 9%, 밀, 글루텐 2%, 소금 무첨가, 조미료. (말토덱스트린, 설탕, 포도당, 효모) 1%, 옥수수 전분, 향신료(후추), 식품 첨가물(INS 1442, INS 1420, INS 461, INS 450(i), INS 500(i), INS 551, INS 322), 천연 향료 첨가			
내용량	160g			
제조일/유통기한	포장에 표기되어 있음(일/월/년)			
저장방법	−18°C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보관하십시오.			
제조사	Tyson Poultry (태국) Company Limited.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밀과 대두가 포함			
영양성분 정보	100g당 영양가, 총 에너지 260킬로칼로리, 제공량: 160g 패키지당 제공량: 1(지방에너지 130킬로칼로리) 100g당 1일 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총 지방 15g (23%) 에너지 포화지방 4g (20%) 콜레스테롤 0mg (0%) 단백질 7g 총 탄수화물 26g (9%) 식이섬유 7g (28%) 설탕 1g 미만 총 지방 9% (포화지방 6.0g) 나트륨 640mg 일일 권장섭취량 %,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31.2g 비타민 A 0% 비타민 B1, 비타민 B2 0% 칼슘, 탄수화물			

● 인증

[필수 인증]

- 태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 태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는 태국으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 시 필수로 취득하여야 함. 제조 업체와 수입업체가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대규모 제조 업체는 제조허가서, 소규모 제조업체는 제조 번호를 부여받음

인증명	・태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발행 및 검사기관	· 태국 식품의약국(FDA)	
강제유무	·필수	₹/)
제출 서류	• 제품등록서 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비용	・200~5,000 叶트	
소요기간	• 3일 (특별통제식품은 약 28일)	
유효기간	· 3년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허가 승인여부 결정 → 식품일련번호 발급 → 승인된 서류 회신	

[선택 인증]

- CICOT(태국 할랄 인증)
 - CICOT 인증은 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임. 본 인증은 취득 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60일 전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음. CICOT의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MUI, 말레이 시아 JAKIM 등 주요 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과 교차 인증이 가능함

인증명	・CICOT(태국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CICOT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حلال
강제유무	• 선택	THE ISLAND: COMMITTEE OFFICE OF TRAILAND
제출 서류	• 할랄 매뉴얼, 원재료 목록, 제품 라벨 샘플 등	
비용	•약 11,500 ~ 21,500 바트	
소요기간	•약 60일	
유효기간	• 1년(만료일 60일 전 인증갱신)	
절차	・서류제출 → (신규사업자) 할랄 교육 → 서류 승인 → 현장실사 및 원재료 검사 → 적합 판정 → 인증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 태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ТВТ
주요 내용	 모든 수입 식품은 태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Import Licence)를 받아야 함 특별관리식품(분유, 우유, 조미료 등 14종)은 반드시 제품 등록이 필요함 태국 현지 수입업체만이 식품의약국(FDA)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 기업은 직접 신청이 불가함 태국 식품의약국(FDA)이 관할하며, 공중보건부(MOPH) 산하 기관에서 발급됨 수입 허가 신청 시 수입업체의 상업등록증, 보관 시설 적합성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됨 특별관리식품의 경우 제품 성분, 제조 공정, 라벨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됨 GMP, HACCP, ISO 22000 등 국제 인증서 원본 또는 공증본 제출이 필요함
애로 사항	・FDA인증이 필수인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정보 필요
기타	※ 태국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제도 개관 https://tha.mofa.go.kr/th-ko/brd/m_3216/view.do?seq=1077622&%3 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

♪ 태국 라벨링 규정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2024년 8월, 새로 적용된 라벨링 규정에 따라 성분 표기는 무게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엄격한 문구(예: "There are XYZ")로 명시해야 함 또한 제조업체 정보와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됨 8월에 변경된 라벨링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던 기업들은 라벨링을 수정해야 함 특히 한국의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함량 순서대로 성분을 나열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등 일반적인 표기를 따르는 등 태국보다 유연한 라벨링 지침을 보이고 있어,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라벨링 지침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수출을 준비해야 함
애로 사항	· 라벨링 지침이 24년 하반기에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기타	※ [Kati] 태국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요건 설명 고시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945&menu_ 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 srchWord=%ED%83%9C%EA%B5%AD&page=1&srchGubun=427 ※ 태국 라벨링 규정 변경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4/08/07/thailand-announces- new-pre-packaged-food-labelling-regulations-mandating-clarity-and- manufacturer-responsibility/

● 태국 방부제 사용 제한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SPS		
	 태국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정 및 표준에 따르면 붕산이 포함된 식품의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한국에서는 가공식품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어, 태국으로 붕산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회수 조치되므로 유의해야 함 ※ 태국 생산, 수입, 판매 금지 식품 		
	1. Brominated vegetable oil	11. Methyl alcohol or Methanol	
	2. Salicylic acid		
	3. Boric acid	12. Diethyleneglycol, Dihydroxydiethyl	
	4. Borax	ether, Diglycol, 2,2'-Oxybis-ethanol or 2,2'-Oxydiethanol	
주요	5. Calcium iodate or Potassium iodate		
내용	6. Nitrofurazone	13. Dulcin (Para-phenetolcarbamide)	
	7. Potassium chlorate 8. Formaldehyde, Formaldehyde solution and Paraformaldehyde	14. Cyclamic acid and its salts (except Sodium Cyclamate)	
		15. AF-2 (Furylframide)	
	9. Coumarin; 1,2-Benzopyrone; 5,6-Benzo-	16. Potassium bromate	
	alpha-pyrone; Cis-o-coumaric acid, anhydride; or Ohydroxycinnamic acid, lactone	17. Daminozide or Succinic acid 2,2-dimethylhydrazide	
		18. Stevia and derivatives.	
	10. Dihydrocoumarin, Benzodihydropyrone, 3,4-Dihydrocoumarin or Hydrocoumarin	19. Melamine and its analogues (Cyanuric acid, Ammelide and Ammeline)	
 애로 사항	• 태국 방부제 기준(특히 붕산)이 한국과 상이하여,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태국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기타	https://www.fas.usda.gov/data/thailand-fo and-standards-country-report-0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식이보충제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태국 내 온/오프라인 기능성 소구와 관련한 광고 문구 사용 여부 및 규정 자문
- 숙취해소, 간기능 보호 등 기능성 효과 광고 가능 여부 검토

♪ 제품 조사 결과

• T-FDA 등록 정보: 식품등록분류: (สบ.5/สบ.7) 표준식품/식이보충제

FDA 식품등록번호	식품 영문명
74-4-01664-5-0003	DIETARY SUPPLEMENT Q.ONE EASY TOMORROW
74-4-01664-5-0004	DIETARY SUPPLEMENT Q.ONE EASY TOMORROW MANGO FLAVOR

• 제품 확인 사항

- 검토 대상 제품은 태국식품법 B.E.2522에 의거 표준식품/식이보충제로 태국 FDA에 식품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 식품법 B.E.2522(1979)에 따른 광고 관련 주요 규정
- 제품의 품질, 유용성 또는 표시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광고는 금지됨
- 사업 목적을 위한 제품의 품질, 유용성 또는 표시에 대한 광고는 해당 광고의 소리, 사진, 영화 또는 텍스트를 당국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광고 승인 절차

- 식품 광고 요청에 대한 광고 전 승인은 T-FDA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됨
- 사전 광고 통제와 별도로 법 위반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식품 광고를 무작위로 모니터링하는 후속 활동도 진행됨

- 기능성 소구 광고 관련 법규
 - 보건복지부 고시(제293호) 2005년 식품보조제
 - 2항: 식품보조제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 외에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식품성분이나 다른 성분이 구성성분이 되어 일반적인 식품의 형태가 아닌 정제, 캡슐, 분말, 부스러기조각, 액체 또는 기타 형태로 건강에 유익하길 바라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을 의미함
 - 10항 (9): "정기적으로 알맞은 비율로 모든 5가지 군의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분명한 내용과 테두리 바탕색과 반대된 색의 굵은 글씨체로 "예방하거나 병을 고치는 효능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
- 식품법 B.E. 2522 -- 5장 식품 관련 등록 및 광고
- 40조: 부당하게 속이려는 의도로 식품의 거짓된 효능, 품질, 효과를 광고해서는 안됨
- 41조: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식품의 효능, 품질, 효과를 라디오, TV, 영상, 영화, 신문이나 다른 인쇄물혹은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고 내용이나 소리, 영상, 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 고려하도록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광고할 수 있음
- 42조: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식품 광고 중단을 명령할 권한을 가짐
- 70조: 40조를 위반하여 식품을 광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71조: 41조를 위반한 자는 5천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72조: 42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간 내내 하루 500바트 이상 1천바트 이하의 벌금을 계속 더 내야 할 수 있음

♪ 자문 결론

- 숙취해소, 간기능 보호 등 기능성 광고 문구 사용 불가
 - 제품의 기능성 소구 목적의 광고 문구(숙취해소, 간기능 보호 등)는 약리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식품의 광고문구로 사용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10항 (9)에 의거하여 숙취해소, 간기능 보호와 같이 약리적 기능에 대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약리적 기능 효과 및 임상시험 결과로써 소명 후 의약품으로 등록 시에만 사용 가능함

- 모든 광고는 사전 승인 필수
 - 태국에서 식품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T-FDA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미승인 광고 시행 시 최대 5천 바트의 벌금 부과 가능
 - 허위, 기만적 광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가능
- 식이보충제 표시 의무사항 준수 필요
 - "예방하거나 병을 고치는 효능은 없다"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해당 문구는 테두리 바탕색과 반대된 색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야 함

(2) 발효유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태국 발효유 제품의 태국 수출 시 현지 수입 등록 요건에 대한 자문 요청

♪ 제품 조사 결과

- 태국 식품 분류 체계
 - 태국 식품법 B.E.2522에 의하여 수입되는 식품의 성분이 태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유익하고 무해한 지를 검토하고 제조시설, 제조공정, 보관시설, 유통과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수입 전 허가 과정을 통해 검증함
 - 태국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 감독함
 - 태국 식품법에서는 모든 식품을 태국인 식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함:
 - ① 특별통제식품 (식생활 안전에 가장 큰 영향)
 - ② 규격 식품
 - ③ 표준 표시 의무 식품
 - ④ 일반 식품 (식생활 안전에 가장 낮은 영향)
 - 검토 제품은 식품 분류상 "발효유"로 분류되며, 보건부고시 No. 353에 의거하여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함

• 수입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 태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입식품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태국에 정상적인 법인이어야 하며, 식품수입허가증을 보유해야 함
- 태국에 법인이 없는 경우라면 태국에 자사 법인을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태국의 파트너를 통해 태국법인의 명의로 허가를 진행해야 함
- 식품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적 서류:
 - ① 신청인(수입자) 법인등록증
 - ② 수입자의 식품수입허가증
 - ③ 수입식품이 보관 유통될 식품창고지 증명서류(자가창고 또는 임대창고)
 - ④ 식품제조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 ⑤ 제조공장의 HACCP, GMP 증명서
 - ⑥ 제조성분표(COI)
 - ⑦ 성분분석표(COA)
 - ⑧ 제조공정도
 - ⑨ 포장 패키징 라벨 시안(기재 내용에 대하여 영문 또는 태국어 번역본)
 - ⑩ 기타 추가 필요 요구 자료

• 미생물 규정 관련 사항 (보건부 고시 No. 353, 2013년)

- 태국 규정은 발효유 제조에 사용되는 미생물 및 효소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
 - ① 요거트(Yoghurt): 스트레토코코스 써모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 ② 아시도필러스 밀크: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 ③ 케피어 발효유: 락토바실러스 케피어, 락토 코커스, 아세토박터, 클루이베로마이세스 마르시아누스, 시카로미세스속 유니스포러스, 시카로미세스속 세리비시이, 시카로미세스 에시구어스
 - ④ 쿠미스 발효유: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클루이베로마이세스 마르시아누스
 - ⑤ 기타 박효유: 락토바싴러스 카세이섭스 비파도박테륨
 - ⑥ 검토 제품에 사용된 특허 유산균 HP7, HY7013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Lactobacillus paracasei)로 태국 유산균 관련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제품 등록과정에서 해당 유산균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영양 강조표시 관련 사항 (보건부 고시 No. 182, 1998년)
- 제품명에 저지방 표기가 있는 경우, 영양강조표시에 해당되어 해당 규정에 의거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성분분석 레포트를 제출해야 함
- 마시는 요거트의 저지방 표시 기준:
 - 저지방량 산출 = (총지방량/100) X 용량 ml의 값,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 자문 대상 저지방 제품: (2.2/100) x 150 = 4.5이며 반올림 값은 5
 - 태국 해당 규정의 저지방 기준은 3g 이하여야 함
 - 해당 제품은 산출값이 5로써 기준값 3을 초과함으로 저지방 표기를 할 수 없음

• 제품 마케팅 문구 사용 여부 검토

- 검토 요청 마케팅 문구:
 - "대한민국 No. 1"
 - "Made by Korean No.1 probiotics company"
 - "Guaranteed by Korean Probiotics technology"
- 태국 라벨 규정상 부적합하다 볼 수 없으나 관련 문구의 증거 자료(대한민국 No. 1의 기준 및 객관적 증거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태국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타사의 제품 사례로 볼 때, 관련 소명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성분 검토

• 통관절차

- 해당 제품 수입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모두 취득한 이후에 태국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
 - ① BL(선화증권)
 - ② CI(Commercial Invoice)
 - ③ PL(Packing List)
 - ④ GMP 증명서
 - ⑤ 태국 FDA 수입허가증
 - ⑥ FTA 관세협정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FORM AK 원본문서

- 수입 절차:
 - ① 제품의 수입반입 시 태국관세청에 수입면장 신고 절차 진행
 - ② 태국 FDA에 LPI(License per Invoice) 신고 절차 진행
 - ③ 태국 FDA 담당직원이 해당 선적서류와 수입반입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
 - ④ 확인 후 제품반출 진행

♪ 자문 결론

- 태국 수출 가능 여부 및 필요 조치
 - 제품 분류상 발효유로 분류되며 보건부고시 No. 353에 의거하여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함
 - 제품에 사용된 특허 유산균 HP7, HY7013은 태국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 과정에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과 소명이 필요함
 - 저지방 제품은 태국 저지방 기준(3g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품명 변경 또는 성분 조정이 필요함
 - 마케팅 문구 사용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
 - 꾸지뽕잎 건조분말, 차조기잎추출분말 등 태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함
- 태국 식품의약국(FDA) 식품 수입 등록을 위해서는 정식 법인이나 태국 파트너 필요
- 수입 시 관세혜택을 위한 FTA 관련 서류(FORM AK) 준비 필요

2024년 한눈에 보이는 **태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